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174

발의연월일: 2024. 8. 23.

발 의 자: 박지혜 • 이건태 • 이기헌

허종식 · 김남근 · 주철현

이재관 • 복기왕 • 채현일

오세희 · 김문수 · 이용우

황명선 · 임광현 · 권향엽

문대림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가 아닌 곳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지정한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하늘로 풍선을 날리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이 많아지고, 날아오른 풍선이 해양으로 떨어져 해양오염 피해의 원인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는 실정임.

한편, 최근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헬륨 풍선을 하늘로 날리는 행위를 쓰레기 무단 투기로 규정하고 금지하는 경우도 있음.

이에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 없이 풍선류 등을 공중으로 쏘아올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관한 과태료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풍

선 날리기를 통한 피해 및 오염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 4항 및 제68조제3항제2호의2 신설).

법률 제 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풍선류 등을 공중(空中)으로 쏘아올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적인 행사 개최 또는 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 또는 단순 실수에 의한 경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8조제3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풍선류 등을 공중으로 쏘아올린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①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①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u> <신 설></u>	④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허		
	가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풍선류 등을 공중(空中)으로 쏘		
	<u>아올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u>		
	<u>니 된다. 다만, 국가적인 행사</u>		
	개최 또는 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 또는 단순 실수에		
	의한 경우 등 환경부렁으로 정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8조(과태료) ①・② (생 략)	제68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3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u><신 설></u>	2의2.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풍선류 등을 공중으로 쏘아올		
	<u>린 자</u>		
3. ~ 14. (생 략)	3. ~ 14.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